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46

제출년월일 : 2003. 9. 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정차금지구역중 견인지역으로 지정·고시(안 제2조제1항).

나. 견인대상자동차 지정(안 제2조제2항).

다. 불법.주·정차의 견인을 고성군에서 운영하는.견인자동차와 대행법인 등을 이용한 견인(안 제3조).

라.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는 소요비용 납부(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보관한 차의 반환)

4. 입법예고

- 기간 : 2003. 7. 3 ~ 7. 22 (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5.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이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동차에 대하여 고성군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요비용) ①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대행법인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 대상차량	견인요금	
	기본요금(편도5㎞까지)	추가요금(매 1㎞증가시)
2.5t미만	20,000원	1,000원
2.5t이상 6.5t미만	25,000원	1,400원
6.5t이상	40,000원	2,500원

2. 보관요금표

○ 고성군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1급지 주차요금 기준에 준함